

문서번호	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-4220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17.04.18.
공개여부	공개

★차장	팀장	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	문화체육본부장	
협 조	등경기장운영처장			

『서울시설공단 - 한국체육학회』

공동협력 업무협약(MOU) 체결 계획(안)

2017.

공동협력 업무협약(MOU) 체결 계획(안)

서울시설공단 산하 전문체육시설과 한국체육학회가 상호 체육분야 협력을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, 나아가 체육분야 선도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산의 기회를 모색코자 함

1 업무협약 개요

협약기관 : 사단법인 한국체육학회

- 1953년 한국체육학회 창립
- 정관상 주요사업 : 체육관련 기초·응용연구, 정부, 유관단체 자문·협조 등

※ 한국체육학회 주요 학술 행사 등 개최현황

- 제97회 전국체육대회기념 제54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('16.10.7~8)
- 2016 88서울올림픽 기념 국제스포츠과학학술대회('16.8.25~27)
-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추진 3년 성과와 향후 전략토론회('16.7.21) 등

업무협약 주요내용

- 협약기간 : 3년 * 만료 1개월전까지 상호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 종료
- 주요협력사업
 -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 및 효율성 담보 방안 정립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(컨퍼런스) 개최
 -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인적 자원 교류
 - 체육을 매개로 사회적 복지 구현을 위한 산학협력 싱크탱크 운영
- 협약체결 : 공단 이사장 ↔ 한국체육학회 회장

2 협약 체결행사 계획

- 일 시 : 2017. 4. 20(목), 12:00
- 장 소 : 서울시설공단 본사 회의실 (2층 채움방)
- 참석대상
 - 공단(총7명) : 이사장, 문화체육본부장,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및 팀장3, 돔경기장운영처 시설팀장
 - 체육학회(총6명) : 회장 강신욱, 총무이사 서희진, 총무이사 홍미화, 사업이사 김혜진, 홍보이사 김지영, 사무국장 신현경
- 진행순서

시 간	내 용	비 고
12:00~12:10 (10')	참석인사 공단 도착 및 환담	
12:10~12:15 (05')	개회, 참석인사 소개 및 MOU 취지 설명	사회 : 월드컵 경기장 운영팀장
12:15~12:25 (10')	공단 이사장, 한국체육학회 회장 인사말	
12:25~12:30 (05')	업무협약서(MOU) 서명	
12:30~12:35 (05')	기념촬영 및 폐회	종료 후 오찬

3 행정사항

- 기념촬영(홍보마케팅실), 협약 장소(인재개발원) 및 음향·차량(총무처) 협조
- 협약체결 후 보도자료 배포, 공단 SNS 등 홍보(홍보마케팅실 협조)
- 현수막 및 업무협약서(별첨) 제작(소요예산 : 금198,000원)



체육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

업 무 협 약 서

서울시설공단과 한국체육학회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는 체육시설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, 체육학의 발전과 국민 체육실천에 기여하고자 상호 신의성실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체육시설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, 나아가 체육분야 선도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산의 장을 기획·추진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 및 효율성 담보 방안 정립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(컨퍼런스) 개최
2.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인적 자원 교류
3. 체육을 매개로 사회적 복지 구현을 위한 산학협력 싱크탱크 운영

제3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협약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한다.

제4조(협약의 해제·해지)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
2.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3.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
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홍보) 양 기관은 협력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·배포하는 경우 상대방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, 보도자료에는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실무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며,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본 협약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.

제7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. 만약,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
제8조(법적구속력 배제) 제7조를 제외한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4월 20일



사단법인 한국체육학회

이사장 이 지 윤

회장 강 신 욱

체육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

업 무 협 약 서

한국체육학회와 서울시설공단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은 체육시설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, 체육학의 발전과 국민 체육실천에 기여하고자 상호 신의성실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체육시설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, 나아가 체육분야 선도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산의 장을 기획·추진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 및 효율성 담보 방안 정립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(컨퍼런스) 개최
2.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인적 자원 교류
3. 체육을 매개로 사회적 복지 구현을 위한 산학협력 싱크탱크 운영

제3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협약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한다.

제4조(협약의 해제·해지)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
 2.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 3.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-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홍보) 양 기관은 협력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·배포하는 경우 상대방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, 보도자료에는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실무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며,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본 협약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.

제7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. 만약,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
제8조(법적구속력 배제) 제7조를 제외한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4월 20일



사단
법인 한국체육학회



서울시설공단

회 장 강 신 욱

이사장 이 지 윤